

#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94. 4. 22

조례정비특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박양현 사회·도시위원장의외 12인
- 나. 제출일자 : 93. 12. 7
- 다. 회부일자 : 93. 12. 23
- 라. 상정일자 : 94. 4. 22

## 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박이찬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농지의 감소로 신규 농업용수 개발이 필요치 않으며 기존 농업용수 시설도 점차 폐지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지역여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(안)

## 3. 전문위원 검토 의견 요지(전문위원 허면)

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에 의거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우리 달서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화되고 점차 폐지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지역여건에 맞지않는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함.

4. 토론요지

없음.

5. 수정안요지

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.

7. 첨부 :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(안) 1부

##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(88. 5. 1 조례 제55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